

최근의 세계지재권 동향과 21세기 한국 특허정책 방향



김 수 동
특허청 차장

I. 이 글을 쓰면서

작년도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국내 경기의 침체, 국제수지의 악화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경제규모가 GNP 5,000억불, 교역 2,801억불로 외형상으로는 세계 선진국 수준에 비하여 결코 손색이 없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제수지적자가 206억불로 어려운 상황임을 쉽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것은 경제를 떠받드는 경쟁력의 결정요소인 임금, 금리, 지가, 물가등 요소비용이 높은 반면 우리 고유의 기술력은 크게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최근 WTO 등장으로 국가간 무역장벽이 이미 허물어져 개방시대로 변하고 기술개발의 촉진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판가름 하는 시대로 바뀔에 따라 우리 경제가 처한 난국을 이같은 생산비용의 억제를 통해서만 타개하기 벅찬 상황이다. 또한 각국에서 기업마다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개발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수명이 점차 짧아지고 신지적재산권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분야의 권리가 등장하고 있는 마당에서 종래의 인식을 뛰어넘는 지적재산권의 개념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수도 나아가 경제적인 번영을 향한 재도약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

목 차

- I. 이 글을 쓰면서
- II. 지적재산권의 개념
 - 1. 지적재산권의 의의 및 체계
 - 2. 지적재산권의 특징
- III. 최근의 지적재산권 국제동향
 - 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 2.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의 추이와 특징
 - 3. 지적재산권 분쟁의 증가 및 분쟁해결시 교역의 배상금지급
 - 4.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추진
 - 5.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 IV.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 현황과 문제점
- V. 21세기 특허정책의 방향 및 '97주요정책
 - 1. 장기발전 방향
 - 2. '97중점 추진업무계획

〈이번호에 전제〉

일까? “20세기를 18세기와 구별하는 것은 생산시설이 아니라 그러한 생산시설에 사용되는 지식이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잘 대변해주는 이 말과 같이, 그 방안은 다름아닌 기술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일이다. 기술경쟁력을 회복하여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 바로 산업재산권의 신속한 확보라는 의미이다.

아울러 세계 경제 및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속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출원대국이 되었으나 아직 선진국의 체질을 갖추지 못한 특허행정을 선진화해 나가는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특허행정의 선진화 필요성을 느끼면서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오는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인력증원, 내부적 제도개혁, 사무능률향상 등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간다는 「21세기 특허행정 선진화 종합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각 부문별로 동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결시켜 나갈 계획이다.

II. 지적재산권의 개념

1. 지적재산권의 의의 및 체계

과거로부터 인류문명이 비약적이고 지속적으로 발달해 오고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인간만이 특유하게 가지고 있는 지적연구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이렇게 인간이 이루어낸 지적창작의 소산을 하나의 재산적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총칭한다.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과 같이 산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산업재산권」, 문화창달과 관련되는 「저작권」, 그리고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신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신지적재산권은 최근들어 기술발전이 점차 고도화·첨단화 되면서 종전에는 권리보호의 범위 밖에 있다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한 것들이다. 이에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인공지능, 캐릭터, 프렌차이징 등이 있다.

2. 지적재산권의 특징

가. 국가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

오늘날 산업이 발전한 국가를 보면 공통적으로 산업재산권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재산권 제도가 이만큼 국가산업에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경제대국이라고 불리우는 미·일은 지난 '94년도 산업재산권 출원순위가 세계 1, 2위를(일본 1위), OECD 회원국의 산업재산권 출원비중이 전세계의 70%에 달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산업재산권이 국가산업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이 크고 산업발전에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이 과연 경제적 화폐가치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참고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유명 브랜드 가치평가전문기관인 Inter-brand Group에서 작년도 세계 유명브랜드의 자산가치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상표는 「말보로」로서 자산가치가 무려 466억달러이었으며 「코카콜라」 434억달러, 「맥도날드」가 189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

으며, 동산·부동산 등 다른 일반적인 재산과 같이 사용·수익·처분도 가능하고 나아가 최근에는 권리를 담보로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속성까지 갖게 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발명기술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만이 부여되므로 독점배타적이며, 권리자체의 양도,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허여·양도와 함께 제품의 생산·판매·수입 등 여러 형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무형의 자산으로서 국제적 이동이 수월하여 세계적으로 쉽게 전파

지적재산권은 전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형의 국제교역 상품과는 달리 각종 교역장벽에 구애받음이 없이 비교적 교역이 자유롭다. 실례로 앞서 언급한 세계적인 유명브랜드가 전세계 곳곳에 전파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혁명이라고 일컬어지듯이 신속하게 정보가 파급되는 상황아래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요인을 초월하여 더욱 확산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다. 다국적 기업화 등 각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긴밀하게 형성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기술제휴 등 국가간, 기업간 협력기반이 형성됨으로써 지구촌화, 세계화의 계기를 제공해 주며, 이동이 수월한 만큼 모방가능성이 커서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의 규범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한 공동협력의 필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라. 연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경제적 이윤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기술개발을 촉

진하는 역할을 하며, 아울러 특허·출원 또는 등록받은 기술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됨으로써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제고시키며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막아준다. 또한 기술개발에 따른 투자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독점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유인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특허기술정보의 교류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선별해서 도입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이전과 직접투자의 촉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Ⅲ. 최근의 지적재산권 국제동향

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지난 '95. 1 WTO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으로써 세계 경제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관세,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이른바 「국경없는 경제」 시대가 열리고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이 획기적으로 발달하여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영역이 범세계적 단위로 광범위해지고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것도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져온 부족자원이나 생산비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의 우열로 바뀌고 있다. 세계 각국은 남보다 독창적인 기술을 갖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기술이 뒤쳐진 국가, 기업은 기술경쟁 대열에서 뒤처져 결국 생존의 위협마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처럼 기술과 정보가 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문제는 종전의 GATT에서 다루지 않던 가장 중요하고도 새로운 이슈로서 WTO 체제에 등장하게 되었다.

2.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의 추이와 특징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주요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술개발의 가속화 현상에 따라 전 세계의 출원도 과거에 비해 더욱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60년대 세계 전체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94만6천건이었는데 22년 뒤인 '82년에 2배 규모인 183만1천건으로 증가한 후 다시 10년 뒤인 '92년에 와서 그 2배인 370만여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산업재산권 출원이 과거보다 더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95년 이후 향후 2000년까지 6년간의 출원전수가 지난 1624~1994년간(370년간) 이미 이루어진 출원전수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컴퓨터, 영상기기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특허출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정보서비스 분야와 소프트웨어 관련 출원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원증가와 더불어 산업재산권의 등록도 최근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60년대 전세계적으로 약 60만건에 불과하던 것이 '80년대 118만건, '94년에는 216만건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술전쟁의 시대”에서 기술확보만이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일·독 등 선진국에서는 GNP의 2.4%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그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재산권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3. 지적재산권 분쟁의 증가 및 분쟁해결 시 고액의 배상금 지급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가, 기업, 개인간 분쟁도 늘어가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시 지급되는 로열티가 매출액의 10~20% 정도에 달할 만큼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대부분 선소송 후협상 방식으로 진행되어 권리보유자인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액수대로 분쟁이 타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분쟁이 주로 선진국의 기업 차원에서 제기되어 오다가 이제는 개인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부품을 설정된 특허를 가지고 이 부품을 사용한 조립품에 대해서도 특허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요구에 개도국이 의도대로 응해 오지 아니 할 경우 산업재산권 보호문제를 구실로 하여 통상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4.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추진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일화 협상이 다자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통일화 움직임은 선진국이 주도해 가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WTO/TRIPs 협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 보호수준화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국제협약 플러스」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WTO 가맹국은 자동적으로 이 협정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WTO/TRIPs 협정에서는 내국민 대우원칙 이외에 「최혜국 대우원칙(MFN)」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지적재산

권 분야에서 여러가지 국제규범을 담고 있다. 즉, 특허존속기간의 연장 및 불특허대상의 축소, 색채 상표제도의 도입, 영업비밀의 보호,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상품의 품질·명성·특성이 어느지역이나 지방과 본질적으로 관련될 경우 그 지리적 표시의 보호,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의 유통저지를 위한 세관의 통관정치청구와 같은 국경조치의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WIPO가 관장하여 추진중인 국제조약으로서 특허법, 상표법 통일화 조약과 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조약이 있다. 기타 EU의 지적재산권 통일화 추진, APEC에서의 제도통일화 논의 등 다자간 협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강화

선진국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간으로 연장하고 신지적재산권 분야에까지 권리보호의 범위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경우 종전 저작권으로 약하게 보호해 오다가 최근들어 특허법 체계로 수용하여 특허로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IV.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 현황과 문제점

1. 현 황

최근 들어 특허에 대한 국내·외적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전체적으로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도 총 출원은 274,082건에 달하였는데, 이는 '95년 대비 14.1% 증가한 것이다. 이중 기술개발과 직접관련이 있는 특허부

문의 출원은 '95년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업계에서 기술개발의 성과를 특허로 출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기계·전자·통신·화학 등 기술 집약형 산업부문의 출원비중이 지난 '80년 60%에서 '95년에는 87.9%로 커졌고, 100대 다출원 기업의 비중이 95.9%를 차지하는 등 출원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해외출원이 외국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93년:미국 50만건, 독일 17만건, 일본 14만건, 한국 8천건)

권리별 출원현황

	'94	'95 (A)	'96 (B)	증가율(B/A)
특 허	45,712	78,499	90,326	15.1
실용신안	39,806	59,866	68,821	15.0
의 장	29,033	29,978	29,859	△0.4
상표	72,581	71,852	85,076	18.4
합계	187,132	240,195	274,082	14.1
- 내국인	151,779	202,198	-	-
- 외국인	35,353	37,997	-	-

2. 문제점

첫째, 심사처리기간이 길다는 점이다.

현재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약 3년에 달해 미국(1년 7개월), 일본(2년)에 비해 심사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최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은 점차 짧아지는데 반해 이처럼 심사처리에 오랜 시간이 지체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칫 권리설정 이전에 제품의 수명이 끝나 현재의 특허제도가 오히려 기술개발을 저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도 일고 있다. 이처럼 산업계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권리가 조기에 확정되지 아니한다면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을 낳게 된다.

둘째, 심사의 질적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작업으로 자료검색을 하고 담당하는 기술범위가 비교적 넓어 전문성이 부족하다. 심사관의 1인당 담당기술범위는(IPC 분류의 최소단위) 299류인데, 미국(33류), 일본(63류), EPO(70류)에 비하면 4~9배 넓다. 그리고 심사관의 장기근속자가 부족(5년이상 24%) 한 것도 심사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심사의 질적수준이 미흡하게 되면 권리가 불확실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많아지며 산업계에서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된다.

세째, 산업재산권 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해 나가는 대응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국제협상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외국인의 국내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전략을 강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째, 특허정보활용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전산검색을 위한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심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며, 산업계에 대해서도 특허기술분야의 정보를 신속하고 상세하게 보급하는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다섯째, 특허로 확보된 기술을 권리화, 사업화 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체제가 아직 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변리사 업계에 국제시장개방과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발족 등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도록 변리사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함에도 아직 이 분야에서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V. 21세기 특허정책의 방향 및 '97 주요정책

1. 장기발전 방향

특허청은 다가오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선진형 특허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당면한 산업경쟁력의 회복과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첫째, 심사·심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토록 지원할 것이다.

세계 제5위의 출원국에 걸맞도록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나가는 것을 특허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심판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산화사업도 조기에 추진 완료할 것이다.

둘째, 심사·심판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고 특허사업화를 지원하며 발명분위기를 진작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업재산권을 국제규범과 일치시켜 나가는 한편 '98. 3 설립예정인 특허심판원이 완비된 조직과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세째, 특허행정의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99년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전자출원시스템을 가급적 빨리 가동시키고, 정보자료의 확충과 특허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97 중점 추진 업무계획

첫째, 심사·심판처리기간을 2000년까지 미·일 등 선진국 수준인 2년 이내로 단축하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심사기간을 1년으로 재단축하는 조치가 취하여지면 추가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심판처리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이루기 위해 2000년까지 심사·심판인력을 총 1,085명으로 대폭 증원한다는 목표하에 우선 금년에는 276명의 인력을 확보토록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심사물량을 작년 대비 24.4% 증가한 166천건으로 늘리고, 처리기간도 특허·실용신안 36개월 이내, 의장 12.5개월 상표 18.9개월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심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심사부서 과장의 심사 참여, 심사기준의 통일 및 심사 표준양식의 활용, 전산기기 증설 및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심사검색시스템의 보강과 함께 선행기술 외부용역을 금년도에는 26개 기술분야 9천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38명의 외부 심사자문위원을 2배로 확대하여 심사에 있어서 이들로부터 깊이 있고 폭넓은 자문을 구해 심사의 신속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한편, 심판에 있어서도 작년 대비 16.1% 증가한 4,770건을 금년내 처리하며 처리기간 역시 18개월에서 13개월로 앞당기도록 할 것이다. 심판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항고사건 중 장기 미처리 상태에 있는 당사자 사건을 1년 이내에 우선처리하는 등 심판업무절차 및 내용을 혁신함으로써 심판처리 기간을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심사·심판의 질적수준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우수심사관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14개 기술분야에서만 심사관을 채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최근 기술수요가 팽창하고 있는 전자·물리 분야를 추가하여 임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고시 출신자와 박사학위 소지자를 폭넓게 채용한 등 심사관의 중·장기 충원계획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심사조직의 신설 등 직제를 확충하고 복합기술의 출현에 대비한 공동 심사팀제 운영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심사·심판관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3~5년차 중견심사관을 대상으로 세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심판관 요원에 대해 해외 연수를 실시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심사 사무능률의 향상

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관 평가제도의 개선과 해외 특허 검색시스템 조기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심사관의 인당 연간 처리물량을 선진국의 평균 수준인 170건으로 적정화하여 심사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심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연구하여 심판업무에 활용하며 항고심판관, 심판관 및 변리사간에 공동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것이다.

세째, 특허행정외의 선진화를 위한 행정쇄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각종 심사·심판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특허·실용신안 이의신청제도를 현재 등록전에서 등록후로 변경하여 실시함으로써 3개월가량 앞당겨 권리를 부여해 주며, 실용신안 무심사제도를 '99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98. 7월 시행을 목표로 국제상표분류(NICE)제도를 도입하고 다류 1출원제도의 도입등 상표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직물의장 등 유행성이 강한 평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직물의장 등 유행성이 강한 평면의장에 대한 무심사 제도를 '98. 3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다의장 1출원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설립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심결문 및 판례의 전산화 추진과 온라인 출원에 대비한 제도 및 법령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CD-ROM으로 공보를 발간함에 따른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수발명에 대하여는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해주어 조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를 통하여 기술, 금융, 세제, 유통 등 분야별 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발명품을 시작으로 제작하는 경우 종전 건당 15백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백

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며 수혜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판로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해외에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해 줄 계획이다. 그리고 기업내에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며 최고 경영자에 대한 특허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기업에서 대응전략 등을 마련하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법정기념일화를 추진하며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발명회관의 설립도 금년중에 완료하여 7월부터 발명진흥회 등 12개 기관이 단계적으로 입주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발명의식을 제고시키고 창의력을 개발하도록 우수발명반이 설치된 26개 학교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발명공작교실을 서울 10개소, 지방 3개소에 설치하는 등 학생발명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편,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례와 부정경쟁행위가 근절되도록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며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의 사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WTO, WIPO, APEC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실정을 감안하여 국제지적재산권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국내 법규의 세계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 증진에 따른 산업재산

권의 보호방안을 강구하며 금년중 우리청이 PCT 국제조사기관에 지정되도록 자료 확보 등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의 인사, 조직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학계, 변호사, 변리사, 기업 등이 참여하는 산업재산권 정책자문회의와 청내 주무서기관 및 기술분야별 심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무서기관회의, 그리고 상표, 의장, 심판등 부문별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정책자문기구를 통하여 산업재산권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네째, 특허행정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99년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4권 전부에 걸쳐 온라인 출원이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일본·유럽 특허청 등의 최신 기술정보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아울러 공보와 특허영문초록을 CD-ROM으로 발간하는 등 특허정보자료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새로이 가동중인 「특허행정정보 종합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민원안내와 더불어 외국 특허자료 및 공보, 특허영문초록, 산업재산권 법령 등 최신의 특허정보를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대민 정보서비스는 PC통신, 인터넷을 통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심판관이 최근의 기술동향을 전문지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노력도 펼칠 예정이며, 산업재산권 유통박람회를 개최하고, 민간단체의 각종 행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허부문에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발특9702**